

## 이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(안)검토보고서

1. 제출자 : 이천시장

2. 제출일자 : 2001.11. 26

3. 관련규정

-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, 제29조(기금의 설치 등)
- 예산회계법 제7조(기금의 설치)
- 지방자치법 제133조 (재산 및 기금의 설치)
- 지방재정법 제110조(기금의 운용등)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(기금의 운용 · 관리)

### 4. 검토내용

본 조례안은

-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
- 제2조는 기금의 재원을 규정
- 제3조는 기금의 사용목적과 기금의 사용범위에 대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
- 제4조는 예산회계법 제7조(기금의 설치)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의 관리 · 운용방식에 대하여 규정
- 제5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(기금의 운용등) 제3,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에 대하여 규정
- 제6조 내지 제10조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심의회)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기금의 관리 ·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, 구성, 기능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제11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(기금의 운용 · 관리)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제12조는 동법 제110조(기금의 운용등) 제3,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제13조는 본 조례안 외의 사항에 대하여 이천시재무회계규칙의 준용을 규정
- 제14조는 시행사항에 대한 규칙에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

★ 결론 : 내용상 법령에 위배되는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